

###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240호
의결년월일	99. 11. 12 (제74회)

제출년월일 : 1999. 11. 10

제 출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설명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한병환)

□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환경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고, 공동체 사회의 어려운 문제에 동참하여 봉사함으로써 봉사자 자신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발전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쾌적하고 안정되게 향상시키는 데 있음.

□ 주요골자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종류를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규정을 둠(안 제5조)
- 센터의 운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 센터는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봉사단체의 지원·육성,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둠(안 제 8조)
-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함(안 제20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조례 제 호

###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환경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조장하고, 공동체 사회의 어려운 문제에 동참하여 봉사함으로써 봉사자 자신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발전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쾌적하고 안정되게 향상시켜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개인, 집단·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①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시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화재·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교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보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②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종류와 범위, 활동방법, 자원봉사자의 지위남용의 금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센터설치) ①시민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을 두고 유급직원으로 전문지도자,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으며 임무, 자격요건, 처우, 배치인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및 상담 교육사업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 의식 확산
4. 인정제도 운영
5. 자원봉사 자료와 정보 제공
6. 자원봉사자 대변

제7조(운영)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을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

### 제3장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구성 및 기능) ①센터는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봉사단체의 지원·육성,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회 구성은 관계공무원 약간명, 시의회 의원 2명 내외,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교수나 민간인 8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부시장과 관계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센터 소장을 겸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센터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인준과 관련된 사항
3. 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및 활용기관(수요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활동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양양대책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정기회는 심의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처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시 회의참석수당
2. 자원봉사자 사업활동을 위한 출장여비
3. 수당 및 실비보상 기준은 부천시공무원여비규정 및 정부노임단가를 감안,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부담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 2. 당해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했을 때
- 3.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4조(간사)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여 회의에 출석 보고할 수 있다.

#### 제4장 자원봉사자의 등록, 교육훈련, 배치

제15조(등록)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개인)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 ①시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비는 시비로 지원한다.

②교육훈련의 내용, 시간, 이수자에 대한 이수증서를 교부한다.

제17조(전문지도자 배치)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도계획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자원봉사 전문 지도자를 둘 수 있다.

제18조(자원봉사 요청) ①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봉사 증서) 시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5장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혜택

제20조(보조금)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교육 연구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장 보 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